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 방안*

정 정 진**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요 약》

이 연구는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와 장애학생 지원 요구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장애학생중심 지원체제로의 변환, 둘째, 장애학생의 대학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보충교육프로그램의 개발·제공, 셋째, 개별화지원프로그램의 강화, 넷째, 장애학생지원 조직의 재구조화, 다섯째, 지역협력체 지원의 다양화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균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가 구축되어야 하고, 둘째, 장애학생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대학 장애 학생 교육복지지원, 교육지원제도, 개별화지원프로그램

1. 서 론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장애인 개개인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간 학습은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이(轉移)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여타 다른 직접적 조치보다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큰, 가장 근본적인 국가사회의 지원방법이다. 따라서 장애인 개개인의 기본

* 이 논문 2005년도 강남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 이 논문은 2006년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주최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학술세미나 발표주제 “대학 장애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시스템 재설계 방안”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h300@kangnam.ac.kr)

권적 학습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이들의 학습권 보장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2005년도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82.08%(일반계 87.47%)가 대학에 진학(한국교육개발원, 2006)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전문기술이 강조되면서 장애학생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5년부터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대학 장애학생이 초기 6개 대학 107명에서 2006년도 현재 73개 대학에 419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 지원으로 입학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실질적인 교육과정 접근을 통하여 학습에의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정 참여를 지원해야 하며, 마즈막으로 생산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에까지 세심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Conderman & Katziyannis, 2002; Hitchcock, Meyer, 2002). 그러나 현재 우리의 여건은 전체적인 기회의 제공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추가조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제도적 지원 미비로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행히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의 제정으로 소수의 대학들은 편의시설·설비와 교수-학습 지원을 어느 정도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은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이동·접근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시설·설비 개선 정도의 편의만을 제공하는 수준이었고, 교육서비스로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개념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였다(김남순, 2001; 김동연, 김영환 1998; 김헬레나, 2000; 박계순 외, 2002; 원종례, 2001; 윤점룡, 2003). 이러한 상태에서 교수-학습 및 생활지원 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 중 휴학자(비장애인의 6배)나 중도탈락자가 속출하는 실정이었으며(김성애 외, 2003; 양재신, 2000; 최민숙 외, 2002), 급기야 대학을 상대로 “학습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까지 나게 되었다(윤점룡 외, 2002).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된 후에야 정부는 장애학생 고등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03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4년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4), 2005년 2차로 조사·평가를 실시하였다. 2003년도 평가의 결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음에도 잘못된 편의시설 설치로 경제적 낭비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영역에는 지원체계가 매우 미약하여 많은 장애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김종인, 2004). 또한 2005년 평가 결과 지원정도가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대학들의 지원은 여전히 크

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주호, 2006). 실제로 장애학생 지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판정을 받은 A대학의 경우 2005년/1학기 재학 장애학생 241명 중 5%(12명)가 학사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정진, 2006).

장애학생 지원요구는 장애유형이나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의 지원 대부분이 수화통역이나 대필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단순한 교수적 지원에만 중점적으로 주어져 왔다. 각 대학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원계획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장애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김동일 외, 2004, 정정진 외, 2003).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도 학생중심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한 지원체제나 실태보다는 공급자 편의중심으로 지원되는 형식적인 교수적 측면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공급자 편의중심 지원은 서비스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겠지만, 개별 장애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모든 곤란은 수혜자인 학생에게 떠맡기고 학습 및 생활의 도움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학생 지원은 개별학생의 요구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그에 알맞은 지원을 제공할 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김종인, 2004; 백유순, 2005). 선진국 대학의 지원추세를 보면 학생 요구중심 지원과 학습력 강화를 위한 보상학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정정진, 이해균, 2005). 따라서,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의 공급자중심 지원체제에서 학생당사자 요구중심 지원체제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별전형제로 입학한 많은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장애로 인한 학습 곤란 외에 기본학력과 수학능력 및 과제완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평가시에 필기력, 의사표현력 및 실험실습기능도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김성애 외, 2003). 그래서 장애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교과학습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석말숙, 강동욱,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학사운영 제도와 기준에 따라 학습하고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의 기본학습능력의 보충이나 별도의 교육과정 마련 없이 일방적인 편의제공만으로는 학습권 보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장애학생들은 대부분 그 동안 분리된 특수학교 혹은 제한된 교육환경에서 단조롭게 생활하고 교육받아 온 까닭에, 완전통합된 대학생활에서 여러 유형의 생활기능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기술이 극히 미약할 수 밖에 없다(김성애 외, 2003). 그러므로 이들의 독립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장애정도와 특성에 맞게 대학 내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한 안내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기술, 자기주장하기나 의사결정 기술 및 자기관리 등의 역량강화(곽정란, 김병하, 2004)를 위한 별도의 지원계획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전문화·개별화된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대학 장애학생 지원 관련연구들은 공급자 중심의 지원실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이제

지원체제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수요자인 학생당사자 중심의 개별화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결과와 장애학생 지원 요구조사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 이 연구의 교육지원 범위는 편의증진법에 의무·권장 사항으로 규정된 시설·설비 영역을 제외한 모든 교육활동 지원을 의미한다.

II.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문헌분석과 요구조사 두 방향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전자는 연구의 전반적 구성방향을 설정하고자 실시하였고, 후자는 구체적 지원요구를 파악하고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 문헌 분석

1) 대상 : 2005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214개교(분교 11)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179개 대학이 제출(84%)하였는데, 분석이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총 157개 {국공립: 38, 사립: 119(분교: 8)} 를 유효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절차 : 실태조사는 각 대학 담당자들에게 설명회를 실시하여 이루어 졌는데, 각 대학은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지표에 따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한 것이다.

<표 II-1> 실태조사지의 구성

영역	부 문	항목 수
1. 선발(6%)	1.1 전형(6)	3
	2.1 학습권 보장 장기 발전계획(3)	2
2.교수-학습(44%)	2.2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13)	6
	2.3 교수-학습 기자재 구비 및 활용(6)	3
	2.4 학습지원(12)	6
	2.5 평가지원(2)	1
	2.6 장학지원(2)	1
	2.7 생활 및 진로지도(4)	2
	2.8 특성화(2)	1

3) 도구 : 도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평가기준”인데, 선발과 교수-학습 2개 영역을 <표Ⅱ-1>처럼 구성, 지표에 따라 5간척의 문항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2. 요구 조사

1) 대상 : 특별전형제 실시 수도권 소재 K, 지방 소재 N, D 3개 대학 지원센터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각 대학에서 3-4학년 재학 시각장애 1급 2명- 3급(저시력) 1명, 청각장애 2급 2명, 휠체어사용 지체장애 2명- 크리치사용 지체장애 1명 총 2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절차 : 면담 6일 전에 전담조직 및 기구, 지원방법과 절차, 담당자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개방형 문항을 심층면담 대상자들에게 제시, 그에 대한 면담을 준비토록 하였다. 2006년 11월 4일 유성 M음식점에서 심층면담(Krueger & Casey, 2000)을 실시하였는데, 면담 초에 연구 기본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다음, 면담대상자 1명이 미리 준비한 면담주제를 발표하고, 그에 대해 영역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그 과정을 녹음·기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불참자 5명(N:시각 1, 청각 1, D: 지체 2, 시각 1)은 별도로 3-5일 후 대학을 방문하여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3) 도구 : 도구는 장애학생 지원제도, 입학지원, 학습편의지원, 보충/보상학습, 생활지원, 대외협력지원, 기타의 7개 영역만을 제시하여 각 영역별 요구사항에 관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3. 자료처리

1) 문헌분석 연구는 전국 157개교(분교 8개 포함)를 대상으로 분석·평가한 것인데, 대학을 입학정원 기준에 따라 대(2,500명이상), 중(2,500명미만 1,250명이상), 소(1,250명미만)규모로 분리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등급판정은 영역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우수’(90.0점이상), ‘우수’(80.0점이상 90.0미만), ‘보통’(65.0점이상 80.0점미만), ‘개선요망’(65.0점미만)으로 분류하여 판정하였다.

2) 요구조사는 7개 영역별 요구사항에 관해 개방형 질문에 대한 반응을 분류하여, 결과는 반응빈도를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문헌 분석

1) 실태평가의 결과

(1) 선발 : 일반전형시 장애학생 별도의 전형방법, 특별전형의 경우 적절한 전형방법의 실시여부를 평가하였다. <표III-1>의 157개 대학 중 61개(39%)가 특별전형제를 실시, 그 중 70% 이상의 대학이 “개선요망” 등급으로 판정받았다.

<표 III-1> 선발영역 평가결과 ()안은 %

구 분	소	중	대	계
최우수	4 (7.27)	6 (10.17)	3 (6.98)	13 (8.28)
우수	3 (5.45)	4 (6.78)	4 (9.30)	11 (7.01)
보통	4 (7.27)	8 (13.56)	7 (16.28)	19 (12.10)
개선요망	44 (80.00)	41 (69.49)	29 (67.44)	114 (72.61)
계	55 (100.00)	59 (100.00)	43 (100.00)	157 (100.00)

(2) 교수-학습지원 : ① 학습권 보장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활용 여부: 이 부문 평가는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라는 기준에 따라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추진 여부, 관련운영위원회 설치 여부를 평가하였다. <표III-2>와 같이 규모에 관계없이 약 30%의 대학들만이 적절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학습권 보장 장기발전계획 평가결과 ()안은 %

구 분	소	중	대	계
최우수	6 (10.91)	12 (20.34)	10 (23.26)	28 (17.83)
우수	2 (3.64)	9 (15.25)	8 (18.60)	19 (12.10)
보통	10 (18.18)	8 (13.56)	8 (18.60)	26 (16.56)
개선요망	37 (67.27)	30 (50.85)	17 (39.53)	84 (53.50)
계	55 (100.00)	59 (100.00)	43 (100.00)	157 (100.00)

②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 “대학 내에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적절히 운영·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기준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전담교직원 배치, 일반학생, 교직원, 도우미 등에 장애이해 프로그램 제공, 도우미에게 장학금지급, 봉사활동 학점인정, 장애학생에게 지원서비스의 안내, 지원서비스 요구반영 제도 실시 여부를 평가하였다.

<표Ⅲ-3>와 같이 이상의 지원체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13%에 불과하고, 75%는 ‘개선요망’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Ⅲ-3>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 평가결과 ()안은 %

구 분	소	중	대	계
최우수	2 (3.64)	4 (6.78)	4 (9.30)	10 (6.37)
우수	3 (5.45)	3 (5.08)	5 (11.63)	11 (7.01)
보통	4 (7.27)	6 (10.17)	9 (20.93)	19 (12.10)
개선요망	46 (83.64)	46 (77.97)	25 (58.14)	117 (74.52)
계	55 (100.00)	59 (100.00)	43 (100.00)	157 (100.00)

③ 교수-학습 기자재의 구입 및 활용: “장애학생용 기자재를 구비,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라는 기준에 따라 기자재의 구비와 유지·보수, 담당교수들의 기자재 활용, 기자재 사용에 대한 장애학생 교육 여부에 대해 평가하였다. <표Ⅲ-4>와 같이 기자재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대학이 25%이고, 약 64%는 ‘개선요망’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Ⅲ-4> 교수·학습 기자재 구비 및 활용 평가결과 ()안은 %

구 분	소	중	대	계
최우수	6 (10.91)	7 (11.86)	12 (27.91)	25 (15.92)
우수	2 (3.64)	8 (13.56)	4 (9.30)	14 (8.92)
보통	7 (12.73)	8 (13.56)	2 (4.65)	17 (10.83)
개선요망	40 (72.73)	36 (61.02)	25 (58.14)	101 (64.33)
계	55 (100.00)	59 (100.00)	43 (100.00)	157 (100.00)

④ 학습지원: “장애학생 학습지원은 수강 전, 수강 시, 그리고 보충학습으로 제공하여, 능동적인 수업 참여와 학습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기준에 대해 강의계획서의 제공, 별도의 수강신청 지원제, 장애조건에 맞는 교수-학습자료 제작지원, 학습도우미 또는 보충자료의 지원, 별도의 학사지도, 학점등록제 시행 등 6가지를 평가하였다. <표Ⅲ-5>과 같이 이들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이 16.5%에 불과한 반면, 63%가 ‘개선요망’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5> 학습지원 평가결과 ()안은 %

구분	소	중	대	계
최우수	4 (7.27)	5 (8.47)	4 (9.30)	13 (8.28)
우수	2 (3.64)	7 (11.86)	4 (9.30)	13 (8.28)
보통	11 (20.00)	12 (20.34)	9 (20.93)	32 (20.38)
개선요망	38 (69.09)	35 (59.32)	26 (60.47)	99 (63.06)
계	55 (100.00)	59 (100.00)	43 (100.00)	157 (100.00)

⑤ 평가지원: “평가지원(시험)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기준에 대해 평가하였다. <표III-6>과 같이 이에 대해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 대학이 36%이고, 약 60%는 ‘개선요망’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6> 평가지원 평가결과 ()안은 %

구분	소	중	대	계
최우수	10 (18.18)	19 (32.20)	12 (27.91)	41 (26.11)
우수	6 (10.91)	4 (6.78)	6 (13.95)	16 (10.19)
보통	2 (3.64)	2 (3.39)	2 (4.65)	6 (3.82)
개선요망	37 (67.27)	34 (57.63)	23 (53.49)	94 (59.87)
계	55 (100.00)	59 (100.00)	43 (100.00)	157 (100.00)

⑥ 장학지원: “장학금 지원해야 한다.”라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표III-7>과 같이 장학금 지원은 약 52%가 ‘우수’이상 평가를 받았고, 약 36%만이 ‘개선요망’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장학지원 평가결과 ()안은 %

구분	소	중	대	계
최우수	19 (34.55)	24 (40.68)	27 (62.79)	70 (44.59)
우수	2 (3.64)	6 (10.17)	4 (9.30)	12 (7.64)
보통	7 (12.73)	7 (11.86)	5 (11.63)	19 (12.10)
개선요망	27 (49.09)	22 (37.29)	7 (16.28)	56 (35.67)
계	55 (100.00)	59 (100.00)	43 (100.00)	157 (100.00)

⑦ 생활 및 진로지도: “지속적인 생활지도와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가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표III-8>와 같이 이들이 제공되고 있는 대학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약 62%가 ‘개선요망’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생활 및 진로지도 평가결과 ()안은 %

구 분	소	중	대	계
최우수	7 (12.73)	12 (20.34)	13 (30.23)	32 (20.38)
우수	1 (1.82)	4 (6.78)	4 (9.30)	9 (5.73)
보통	9 (16.36)	7 (11.86)	3 (6.98)	19 (12.10)
개선요망	38 (69.09)	36 (61.02)	23 (53.49)	97 (61.78)
계	55 (100.00)	59 (100.00)	43 (100.00)	157 (100.00)

⑧ 특성화: “특성화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라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표 III-9>과 같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30% 정도이고, 약 64%가 ‘개선요망’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장애학생지원 특성화 평가결과 ()안은 %

구 분	소	중	대	계
최우수	12 (21.82)	16 (27.12)	15 (34.88)	43 (27.39)
우수	0 (0.00)	4 (6.78)	1 (2.33)	5 (3.18)
보통	2 (3.64)	2 (3.39)	4 (9.30)	8 (5.10)
개선요망	41 (74.55)	37 (62.71)	23 (53.49)	101 (64.33)
계	55 (100.00)	59 (100.00)	43 (100.00)	157 (100.00)

이상과 같이 장애학생 교수-학습 영역의 지원실태는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학습권 보장의 핵심이 되는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지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요구조사 분석 결과

장애학생들의 지원에 대한 요구경향은 어떠한지를 지원영역별로 알아본 결과, 장애영역별, 지원영역별 응답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표 III-10>에 제시하였다.

1) 지원제도에 대한 요구 :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체제 구축, 지원창구의 일원화, 자원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시용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입학전형에 관한 요구 : 원서구입부터 접수까지 편의제공과 전공선택을 상담을 위해 장애인 선후배 안내원의 배치, 신입장애학생에게는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후에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을 제공에 대한 요구가 각 영역별로 크게 나타났다.

3) 교수-학습 편의지원 요구 : 장애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시간 연장, 수강신청 우선지원제, 도우미 제공, 장애학생 배려 교수방법(판서 등), 학습 교재·교구 지원, 적절한 평가방법 사용, 교수-학습 지원인력(대필·수화)제공, 교강사 강의노트 파일 제공, 과제물 장애학생 고려 적절히 제시, 장애학생 “지정좌석제, 교재·교구의 신속한 보수 혹은 대치, 시험시간 연장 순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보면, 지체장애학생은 낮은 반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학생들의 요구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4) 보충/보상학습 지원 요구 : 영역은 장애학생 개별교수(tutoring), 장애인 정보화 교육, 보조공학(전자, 점자도서 등) 활용교육, 학습전략(필기, 시간관리 등)의 지도, 학습 도우미(mentor)제 운영, 자기주장 훈련, 자기관리 훈련 등 역량강화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장애학생의 대학에 대한 지원 요구 내용 () 속은%

구 분		응 답 내 용	시(9)	청(6)	지(9)	계(24)
지원 제도	제도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지원체제 구축	9(100)	6(100)	9(100)	24(100)
		- 지원 전담자 배치로 지원창구 일원화	9(100)	6(100)	7(100)	22(91.67)
		- 형식적 제도 아닌 실질적인 지원제도	9(100)	5(83.33)	8(88.89)	22(91.67)
		- 장애학생 자원봉사센터 설치	8(88.89)	5(83.33)	7(77.78)	20(83.33)
교육 지원	입학 지원	- 입학생 편의제공 : 원서구입-접수	7(77.78)	5(83.33)	6(66.67)	18(75)
		- 원서교부 장애인 선후배안내원 배치	5(55.56)	3(50)	4(44.44)	12(50)
		- 신입장애생전체·개별오리엔테이션	5(55.56)	4(66.67)	3(33.33)	12(50)
	학습 편의 지원	- 수강신청 우선지원제, 도우미 제공	9(100)	5(83.33)	9(100)	23(95.83)
		- 장애학생 배려 교수방법(판서 등)	9(100)	4(66.67)	5(55.65)	18(75)
		- 학습 교재·교구 지원	9(100)	3(50)	4(44.44)	16(66.67)
		-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평가방법 사용	6(66.67)	5(83.33)	4(44.44)	15(62.5)
		- 교수-학습 지원인력(대필·수화)제공	5(55.56)	3(50)	4(44.44)	12(50)
		- 교강사 강의노트 파일 제공	5(55.56)	4(66.67)	3(33.33)	12(50)
		- 과제물 장애학생 고려 적절히 제시	4(44.44)	3(50)	5(55.56)	12(50)
		- 장애학생 “지정좌석제”	3(33.33)	3(50)	5(55.56)	11(45.83)
		- 시험시간 연장	5(55.56)	2(33.33)	4(44.44)	11(45.83)
		- 교재·교구의 신속한 보수 혹은 대치	3(33.33)	3(50)	4(44.44)	10(41.67)

<표 III-10>에서 계속

구 분		응 답 내 용	시(9)	청(6)	지(9)	계(24)
교육 지원	보충/ 보상 학습	- 장애학생 개별교수(tutoring)제	6(66.67)	3(50)	6(66.67)	15(62.50)
		- 장애인 정보화 교육	4(44.44)	3(50)	6(66.67)	13(54.17)
		- 학습도우미(mentor)제 운영	4(44.44)	3(50)	5(55.56)	12(50)
		- 보조공학(전자,점자도서 등) 활용교육	3(33.33)	3(50)	4(44.44)	10(41.67)
		- 학습전략(필기, 시간관리 등) 지도	3(33.33)	3(50)	4(44.44)	10(41.67)
		- 자기주장 등 역량강화 교육	3(33.33)	2(33.33)	4(44.45)	9(37.5)
생활 지원	생활 지원	- 장애인 취업상담 및 지도	8(88.89)	4(66.67)	5(55.56)	17(70.83)
		-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정보 제공	5(55.56)	4(66.67)	7(77.78)	16(66.67)
		- 장애학생 동아리 지원	6(66.67)	4(66.67)	5(55.56)	15(62.5)
		- 생활적응 위한 생활상담	4(44.44)	3(50)	5(55.56)	12(50)
		- 생활도우미(mentor)제 운영	4(44.44)	2(33.33)	4(44.45)	10(41.67)
		- 장애학생 등급별 장학금 지원	3(33.33)	2(33.33)	4(44.45)	9(37.5)
		- 이동 및 교통 정보제공	3(33.33)	0(0)	5(55.56)	8(33.33)
		- 기숙사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지원	2(22.22)	1(16.67)	3(33.33)	6(25)
- 기숙사에 장애인 학습도우미 지원	1(11.11)	1(16.67)	3(33.33)	5(20.83)		
대의 협력		- 대학간 진로직업지도 프로그램 공유	7(77.78)	5(83.33)	6(66.67)	18(75)
		- 지역내 장애인 취업알선기관 교류	7(77.78)	4(66.67)	5(55.56)	16(66.67)
		- 장애인복지 지역협의체 운영	6(66.67)	3(50)	5(55.56)	14(58.33)
		- 대학간 장애학생 지원컨소시엄 구축	3(33.33)	3(50)	5(55.56)	11(45.83)

5) 생활지원 요구 : 전체 평균으로 보면 장애인 취업상담 및 지도,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정보 제공, 장애학생 동아리 지원, 생활적응 위한 생활상담, 생활도우미(mentor)제 운영, 장애학생 등급별 장학금 지원, 이동 및 교통 정보제공, 기숙사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지원, 기숙사에 장애인 학습도우미 지원 순으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6) 대의협력 지원 요구 : 대학간 진로직업지도 프로그램 공유, 지역내 장애인 취업알선기관 교류의 확대, 장애인복지 지역협의체 운영, 대학간 장애학생 지원컨소시엄 구축 순으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3. 대학 장애학생 교육지원 문제

이상과 같이 실제 조사평가 결과와 장애학생 요구조사 및 선행연구 내용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5개 영역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특별전형제 운영의 부실

특별전형제도의 시행상 첫째, 장애학생 입학기준이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전공학부(과) 선정시에 장애의 특성 및 적성에 맞는 전공의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둘째, 특별전형 입학기준이 일반전형에 비해 학업성취 수준이 낮아 이로 인한 휴학, 학사경고, 학업포기, 생활 부적응 등 문제 유발 가능성이 크다. 셋째, 특별전형 대상이 시각, 청각, 지체장애로 제한돼 학습장애(ADHD 포함), 언어장애, 정신장애(우울증, 양극성장애 혹은 심한 불안장애), 발달장애 등 고등교육 가능대상학생들이 제외되고 있다.

2) 교수-학습 지원의 미약

(1) 교수-학습지원 : 장애학생의 원활한 교수-학습 지원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의 특성과 개별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적절한 교수 및 관련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 지원방법의 이해부족 및 물리·재정적 여건의 한계 등으로 인해 대필도우미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단순 학습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개별 학생 중심의 전문화된 학습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더욱이 평가지표에는 장애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과정 및 체계에 대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학생들이 겪는 학업상의 어려움은 장애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김동일 외, 2004). ① 지체 및 뇌병변장애는 강의실 접근, 신체활동이 필요한 교과학습, 보고서 및 답안지(평가) 작성 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조음장애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학습수행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시각장애는 현재 음성으로 전환할 강의자료 자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점자의 활용 및 점자도서 개발에 의한 정보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정보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③ 청각장애는 수화통역이나 전문속기사를 통한 지원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의에서 소외되고 있다. 대필도우미의 교과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 타자속도 문제, 전문용어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전달, 강의내용의 이해와 수업참여 문제, 발표나 토론 위주의 수업일 경우 수업참여 자체가 제한된다.

(2) 교수-학습 기자재의 구비 및 활용 미약

특별전형제 실시 대학 중 장애학생이 적은 경우 장애학생용 교수-학습 기자재를 대상으로 없으면서 평가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전시용으로 구비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는 구비하지 않은 경우, 고액의 기자재를 구입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음으로써 재원의 낭비만 한 경우가 있다.

3) 생활지원의 미약

(1) 대학 생활지원의 미약 : 장애학생들은 대부분 분리된 특수학교 혹은 제한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아 온 까닭에 여러 유형의 생활기능과 자발적인 생활정보의 취득,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기술 등이 극히 미숙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상담실, 전산실, 어학원, 도서관, 각종 문화공연, 스포츠센터, 친구사귀기, 동아리활동, 축제 등의 이용과 참여가 어렵다. 시설 접근 및 이동의 어려움, 의사소통장애,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학생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장애학생의 생활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2) 진로 및 취업지원 미약 : 특히 장애학생이 대학교육을 받는 가장 주된 이유가 취업과 관련된다는 각종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거의 불모지와 다름없는 장애학생의 취업지도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주호, 2006). 그러나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의 치열한 각고의 노력 끝에 졸업은 하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 대학이 장애학생과 그의 가족을 두 번 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이해균, 2006).

이처럼 고등전문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자로 남게 되면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장애학생의 경우 취업과 관련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충분치 않고, 취업가능한 직종이 많지 않으며,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역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장애학생은 1·2학년때부터 체계적으로 진로지도를 통해 직업적성을 개발하고 직업정보를 입수하여 전문적인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아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지도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학이 거의 없어서 장애학생의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

4) 장애학생 지원 전담조직의 부재 및 전문인력의 부족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전담조직은 장애학생 지원의 계획,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도우미의 교육과 관리·운영, 교수-학습 기자재의 대여·관리 등 장애학생 지원을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독립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성격이 학교부서로부터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대학 행정기구의 한 부서에 부속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하나의 부서에 부속된 성격으로 인하여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적절한 인력의 확보도 곤란한 실정이다.

5)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부족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첫째, 장애학생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둘째, 장애학생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장애학생의 특성과 적성, 요구, 흥미 등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IV.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방안

여기에서는 문헌분석 결과와 장애학생 지원 요구조사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 결과물로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본 방향

첫째, 장애학생 지원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학생 중심 지원체제로 변환한다: 지금까지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체제가 장애의 정도나 특성 및 요구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제라기 보다는 대필이나 수화통역과 같은 공급자 편의중심의 단순한 학습지원에만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인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중심으로 지원체제를 변환해야 한다.

둘째, 장애학생 지원은 기본학습력 증강을 위한 보충/심화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특별전형제도로 대학에 입학한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수학능력이나 언어이해력, 보조공학 활용기술 등의 기본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기본학습능력을 보충시키지 않은 채 보조지원이나 학습 편의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학업능력의 저하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의 학업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기본학습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보충/심화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장애학생 지원은 개인 요구에 맞는 개별화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장애학생 개인의 장애 정도와 유형, 그리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습지원요구는 다양할 수 있다. 학생 개인의 다양한 요구분석을 기초로 지원의 정도와 방법을 결정하지 않고는 지원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개개 학생의 요구, 교육경험과 주요 학습매체, 의사소통수단 등의 특성에 따라 지원을 개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은 모든 장애학생 교육의 형평성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의 요구에 알맞은 맞춤형지원을 일관성있게 제공해야 한다.

넷째, 대학은 지원조직을 재구조화하여 교육지원부를 설치·운영한다: 지금까지 장

애학생 지원체제는 교재·교구, 장학금 지원 등의 학습 편의를 위한 물적지원과 대필도우미, 수화통역자, 실습 및 이동보조원 등의 인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장애학생 학습력 증강업무를 확대할 경우 기본학습능력 강화와 아울러 학업수행능력의 신장, 생활적응력의 향상, 직업적성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육에 중점을 둔 지원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할 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장애학생의 학업성취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다섯째, 대학은 지역협력체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공유함으로써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대외협력지원부서를 설치하여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대학, 지역사회 관련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보조인력, 정보, 학습기자재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기간장애재학생이 소수인 대학들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학습기자재와 수화통역자 등의 전문적 지원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소속 대학들끼리 학점교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공유함으로써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기회 및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한다.

2. 대학 장애인 교육지원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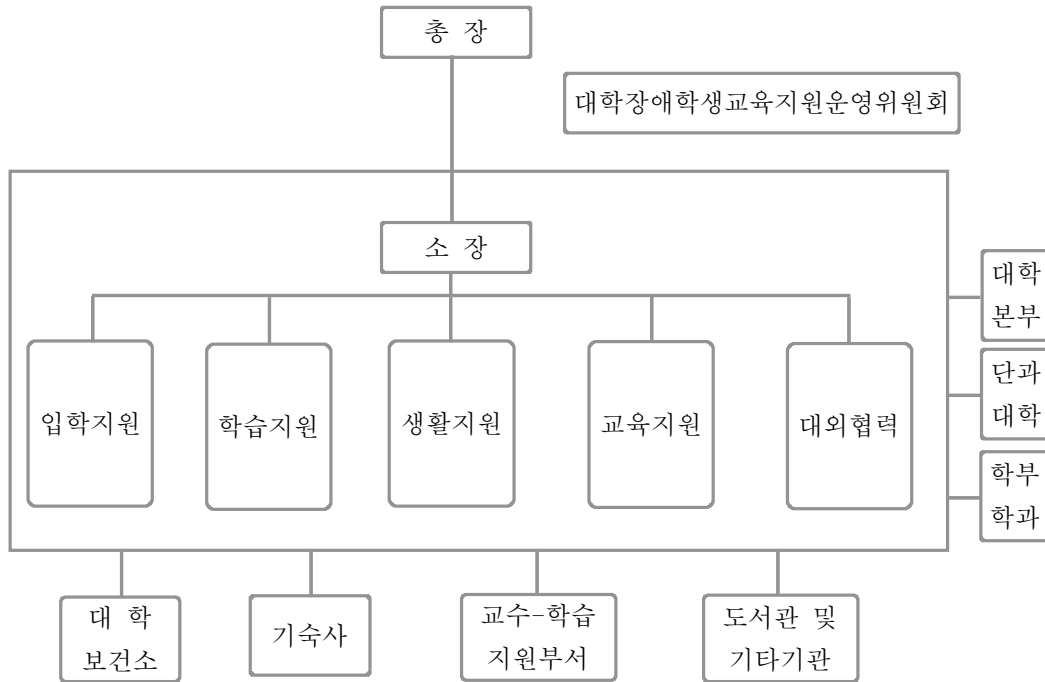
1) 지원 체제

(1) 지원제도: 대학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선발, 학습지원, 생활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외협력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들을 학칙에 규정하고, 실행조직을 구성하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장애학생 지원 관련운영위원회: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심사·선정, 교육 및 생활지원, 학칙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대학 재정의 총괄책임자, 장애인복지 관련전공교수, 장애학생과 그 부모가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3)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 장애학생 지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수와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규모로 지원담당부서(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4) 지원절차: 장애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각종 문서와 학생들의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개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원절차로는 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지원여부 결정·통보 → 지원 → 지원종료 및 평가 → 지원내용 개선 과정을 설정하여 이것을 순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림1> 장애 학생 교육지원업무 전담조직도

(5)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원자와 수혜자가 서로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학 운영방침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지원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지원도우미의 책임, 교강사의 책임, 동료 일반학생들의 책임, 그리고 각 장애영역별 지원 내용과 방법, 지원절차 등의 교육지원이 담긴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하여 배포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입학 지원

(1) 전형 방법: 대학은 장애학생이 입학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어떤 차별이나 부당한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정한 방식으로 입학사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전형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장애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방식으로 별도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 원서 교부 및 접수: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학생들이 입학관련 정보와 입학원서를 교부받고,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과정을 통해 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자료, 기자재 및 보조인력 등 별도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정: 대학이 특별전형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진흥법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해야 한다. 선정고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고사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신입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것과 같이 장애학생들에게 특성에 적합한 대학생활의 과정과 방법을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해 줌으로써 대학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학습 지원

장애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대학은 교육과정에서 장애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고 수강, 과제수행, 평가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1) 수강신청: 수강신청 공고문을 점자 또는 음성합성 프로그램 등으로 제공하고, “장애학생 수강신청 우선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학기별로 능력에 알맞는 학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학점 등록제도”를 학칙에 규정하여 시행한다.

(2) 강의실 접근: 대학은 장애학생을 위해 강의실 배정,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구 사용가능 책상 제공으로 “장애학생 지정 좌석제”를 실시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수화통역사나 대필자 등의 보조인력을 위한 책·걸상도 제공한다.

(3) 학습도우미: 보조인력을 요청하는 장애학생의 명부 및 도우미로 활용할 일반학생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고, 요청시에는 대필자, 수화통역사 등의 보조인력을 지원해야 하며,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인건비 또는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이들에게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해 준다.

(4) 교재·교구의 지원: 장애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모든 교재·교구를 구비하여 안내 또는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최대한의 학업성과를 성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교과목의 교재를 점역하거나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5) 강의 지원: 장애학생이 신청한 교과목 담당교·강사에게 출석부의 비고란 등에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을 기록하여 출석부를 배부하거나, 담당교수에게 장애학생 수강에 대해 개인별로 안내 고지한다. 설명식 수업의 경우 강의내용 녹음 허용, 강의자료 파일 제공을 요청하고,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수화통역사, 대필자 등의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실험·실습시간에 장애학생이 참여할 경우 실험·실습 참여 일반학생들에게 장애학생의 지원방법을 안내해 준다.

(6) 판서: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강의 진후에 판서내용을 파일이나 녹음자료로 제공한다.

(7) 과제 지원: 장애학생을 위해 과제 제출방법을 필기물에 한정하지 말고 파일로 제출하거나, 대필작성의 허용, 면담을 통한 대안과제 제시방법도 허용한다.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자원봉사자 등을 배정하여 자료검색, 문헌수집을 지원한다.

(8) 평가 지원: 장애학생의 평가시간을 일반학생보다 대략 1.5~2배로 연장해 주고, 답안의 대필을 허용할 경우 별도의 대필자와 독립된 장소를 제공한다. 장애학생 특성에 적합하게 평가지를 제작·제공한다. 장애학생을 위해 평가방법이나 절차를 달리 해야 할 경우 장애 특성에 따라 필답고사의 비중을 조정하고, 다양한 과제와 구술고사 및 수행평가의 반영도를 조정한다.

4) 생활 지원

대학은 장애학생이 대학 내의 생활에서 불편을 경험하지 않도록 학업 외 생활 전반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직업적성과 흥미 등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추후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 및 직업을 유지하도록 사회생활로의 전환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 행정부서 이용: 장애학생이 대학생활의 기본이 되는 행정부서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특성에 알맞는 특별한 편의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증명서 발급이나 지원요구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하는 팸플렛이나 리플렛을 요청이 있을 경우 접자·확대 및 파일자료로 작성·배부한다.

(2) 기숙사 이용: 장애학생이 대학 내의 기숙사 이용시 장애 특성에 따라 가능한 넓은 공간, 출입구·세면장·식당 등과 가까운 위치의 방을 일반학생보다 우선 배정한다. 장애학생이 기숙사 내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애 특성별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숙사 내에 장애학생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3) 편의·복지시설 이용: 대학의 도서관, 학생회관, 식당 등에는 장애학생 전용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거기에는 장애학생 특성에 알맞는 설비를 구비하여 좌석 우선배정을 해야 하며, 장애학생 도우미 등의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4) 장학금 또는 학비 지원: 장애학생은 장애로 인한 치료비, 보장구비, 교통비, 학습기자재 구입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학업수행을 위하여 장학금이나 학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의 학습 및 생활을 보조하는 장애학생 도우미를 위한 장학금을 적절히 확보·배정한다.

(5) 이동·교통생활: 장애학생이 이동지원을 요구할 경우 교내의 보조인력이나 지원인력, 지원업무 담당부서는 물론, 지역사회의 운수회사,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작·배부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6) 여가·문화생활: 대학 내의 학생 동아리 및 여가·문화생활 프로그램 홍보물을 장애 특성에 알맞게 제작·제공함과 아울러 대학 내의 여가·문화생활 시설 등에 장애학

생 좌석과 전용공간을 마련한다. 그리고 장애학생들만의 여가·문화생활 동아리를 장려·지원한다.

5) 교육 지원

특별전형제도로 입학한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그동안 특수학교 혹은 제한되고 분리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아온 까닭에 일반학생들에 비해 수학능력, 언어이해력 등의 기본학습능력과 대인관계, 자기주장 등의 기본적 사회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보충교육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대학내 학습활동 및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대학에서 학습과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학습능력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충교육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교육프로그램 지원

① 보충교육프로그램: 강의 내용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내용을 장애 특성에 맞게 제작·배부하고, 필요하면 교과목 수강을 위해 기본학력의 보충·심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며, 담당교강사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장애학생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보충·심화학습을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의 선배들로부터 학습지원을 받는 “장애학생 개별교수제”를 시행한다.

② 학습전략 프로그램: 장애학생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학습전략 사용이 미약하다.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학습전략을 장애 영역별 전문가들을 통해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예컨대, 노트필기 기술, 시간관리, 암기법, 시험 공부 방법 등을 지도한다.

③ 컴퓨터 교육: 시각장애, 지체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공학을 독립적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조공학적인 편의제공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선택·배치, E-mail 계정, 웹상의 자료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④ 학습매체 활용 교육: 학습매체가 필요할 경우 교육공학전문가의 사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매체, 예컨대, 전자도서, 확대문자, 음성지원 프로그램, 점자도서, 촉지도 및 모형 을 제공하여 학습하는데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2) 사회적응기술 교육

① 생활상담: 장애학생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자료를 구비하여 생활상담을 제공한다. 학과 지도교수 등을 전담지도교수로 지정하여 장애학생의 생활지도 및 상담, 조정 역할을 부여한다.

② 대인관계: 대학 학생상담센터 등에 장애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일반학생들과의 의사소통력을 증강시켜 준다. 특히, 모범적인 선배학생을 선정하여 대학생할 전반에 걸친 자문과 안내를 해주는 멘토링(mentoring)제를 시행한다.

③ 권익옹호 교육: 장애인이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지원법률, 자신의 장점 개발법, 자기주장 훈련, 자기개조전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관리 능력을 개발토록 지원한다.

④ 진로상담 및 직업 평가: 장애학생 지원부서의 진로상담 직원은 학생의 진로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진로상담을 실시하며, 필요하면 장애학생의 개별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취업과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⑤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장애학생 지원부서에 취업알선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장애학생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취업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자료를 수집·제공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국립특수교육원, 지방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 주최하는 장애인 직업 및 취업 관련설명회, 박람회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수집·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업체를 발굴하고 취업을 알선한다.

(3) 조사·연구 사업

① 교내 장애학생에 대한 조사·연구 및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원요구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③ 장애학생을 위한 복지정책의 개발 및 각종 교수-학습자료를 연구·개발·제작하여 보급·지원한다.

6) 대외 협력

대외협력부서는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대학 및 지역사회 관련단체나 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확보·제공하기 어려운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협력·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운영한다.

(1) 대학이 확보하지 못한 수화통역자 등과 학습기자재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협력체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

(2) 소속 대학들끼리 학점교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활용함으로써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기회 및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장애인복지관, 지역산업체, 지역행정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구축하여 대학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알선을 활성화 한다.

(4)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대학 장애학생 복지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결과와 장애학생 지원 요구조사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방안과 아울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학들이 특별전형을 실시해야 하며, 장애학생들이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둘째,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이 전반적으로 미약하고, 개별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부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다. 학습지원은 개인의 요구에 알맞게 수강신청 지원, 학습도우미 지원, 평가 지원, 학점등록제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학생이 대학 내의 적응활동에서 불편을 경험하고 배제되지 않도록 이동, 시설사용, 정보접근, 경제활동 등의 편의와 지원을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학업 외의 개인적인 적응활동 전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수학능력, 언어이해력 등의 기본학습능력과 대인관계, 자기주장 등의 기초적 사회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교수-학습 편의지원만으로는 대학내 학습활동 및 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들이 대학에서 학습과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학습능력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충교육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넷째,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와 기구, 전문인력 등 전달체계의 확립이 미약하다. 대학은 대외협력부서를 설치하고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대학 및 지역사회 관련단체나 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확보·제공하기 어려운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협력·공유하여야 한다.

끝으로 대학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을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동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대학이 장애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학습편의는 물론, 보충/보상학습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재정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대학은 최적의 교육환경을 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학에서 사회 진출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곽정란, 김병하 (2004). 장애담론이 정치적 이해: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5(3), 249-263.
- 교육인적자원부(2003).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평가편람.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보고서.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김남순(2001). 장애학생의 특례입학과 대학시설 환경 및 제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6(1), 81-100.
- 김동일 외(2004). 장애인 고등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인고용**, 52(여름호), 5-24.
- 김성애, 박은혜, 최민숙(2001).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모형연구: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학생지원.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2003).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7(4), 335-357.
- 김종인(2004). 장애학생 지원 조직구성과 실제. 제2회 장애학생 통합교육 세미나. 한국재활복지대학. 25-53.
- 김헬레나 (2000).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계순 외(2002). 대학입학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현장특수교육**, 9(3), 34-44.
- 백유순(2005). 장애 대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서비스요구 및 지원 실태와 만족도 조사-청각장애 대학생을 중심으로-**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제**. 12(4), 151-169.
- 양재신(2000).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 장애 대학생 교육환경. **현장특수교육**, 11/12월호, 41-44.
- 원종례(2001). 장애대학생의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 8, 47-70.
- 윤점룡, 김주영(200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이후 학내 지원체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이주호(2006).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되어야 한다. 정책자료. www.happyschool.or.kr.
- 이주호(2006). 대학 장애인 교육복지 실태조사 분석: 보도자료. www.happyschool.or.kr
- 이해균(2006). 장애학생 대학특례입학제도 실시, 이후 10년. **날빛**. 제9호, 22-23.
- 정정진 외(2003).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편람 및 기준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정정진(2004). 대학 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19(2), 1-23.
- 정정진(2006). 2005년도 대학 장애학생 복지지원 실태조사. 미발표 자료.
- 정정진, 이해균(2006). 대학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1), 507-533.
- 최민숙, 김성애, 박은혜(2002). 장애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교수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특수교육**, 제1권, 133-157.
- 한국교육개발원 (2006).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Conderman, G. J., & Katziyannis, A.(2002). Instructional issues and practices in secondary

- special education.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3, 169-179.
- Hitchcock, C., Meyer, A., Rose, D., & Jackson, R. (2002 Nov/Dec). Providing new access to the general curriculum.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8-16.
- Krueger, R. A. & Casey, M. A. (2000).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Inc.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Educational Support Systems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Chung, Chung-Chin

Kangnam University

<Abstract>

Mainl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analyze problematic matters on support systems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offered by their universities. It wa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hich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the year of 2005, 'The survey on educational support systems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Furthermore the needs in terms of providing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as discussed.

In order to overcome those concerns and limitations several issues were addressed. The following is a list of issues that were need to be addressed. First, the support systems should be implemented in a manner of student-centered. Seco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offered especiall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rd, individualized support programs should be provided. Forth, resources should be re-systemized in a better manner. Last, community based approach should be address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appropriate learning for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policies on support systems should be set up and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should be provided to those colleges.

Key Words : support systems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educational support systems, individualized support programs

논문 접수: 2007. 2. 12 심사 시작: 2007. 2. 20 게재 확정: 2007. 3. 23